

#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승인안) 검토보고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됨.

## 2. 주요골자

- 서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3개소(100평 이상)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 3. 취득승인요청

-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 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로서
-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600,000천원이 되겠음.

## 4. 취득방법

-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 선정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함.

## 5.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 지방자치법 제3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 6. 검토의견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 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에 적정부지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선정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취득안에 따른 승인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